

노동정책연구  
2010. 제10권 제2호 pp.99~123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고용보험법의 현행 적정적립금 기준 평가와 대안 지표로서의 준비율 배수\*

어재준\*\*  
김동헌\*\*\*

현행 고용보험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편의(偏倚)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요율 변경 기준의 대안으로 적립금/지출 배수 대신  $\frac{\text{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text{역대수지균형보험료율의최댓값}}$ 으로 정의되는 준비율 배수를 제시한다. 그리고 향후의 논의에서 준비율 배수를 채택할 때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어떠한 원칙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시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경기변동 주기 간에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시기에는 ‘과거 ○○년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평균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형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 수급자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준비율 배수, 적정적립금, 수지균형 보험료율, 고용보험

논문접수일: 2010년 5월 3일, 심사의뢰일: 2010년 5월 20일, 심사완료일: 2010년 6월 8일

\* 고용보험 재정 결산 자료를 제공해 준 노동부와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노동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논문 형태로 보완 발전시킨 것이다.

\*\* (제1저자)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사회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 경영·관광대학 경제금융학과 교수(dhkim@dongguk.ac.kr)

## I. 연구의 배경

고용보험제도는 1995년 7월 도입되어 올해로 운영 15년째를 맞이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도산과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를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위상을 확립하였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제도적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 나아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에도 기여하여 2009년 현재 연간 수혜자가 14.6만 명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8년 상반기까지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인력수급 불일치 등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처하는 고용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커져 왔으나, 2009년에는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침체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그 지출 특성으로 말미암아 경기변동을 완화시켜 주는 효과를 갖는다. 즉 불황기에는 급여 지출이 늘고, 호황기에는 급여 지출이 줄어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경기변동 과정에서 적립금이 증감하는 추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요율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불경기에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요율을 올리고 호경기에 보험료 수입을 줄이기 위해 요율을 낮출 수 있다. 그리하여 제도가 지닌 경기안정화 효과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나아가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요율 조정이 경기안정화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은 적립금 수준이 과소할 때 초래되기 쉽다.

한편, 지나치게 많은 적립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높은 수준의 보험료율은 비임금 노동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급여를 관대하게 지급하자는 주장이나,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정치적 압력을 초래하여 단순한 노동비용 증가 이상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캐나다와 독일의 경험을 고찰해 보면, 이들 국가에서는 사용 가능한 기금이 풍족할 때 고용보험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정치적 고려에서 고용보험제도에 도입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

다(Kesselman, 1983; 허재준 외, 2003). 이들 국가의 고용보험 재정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엄밀한 재정 전망에 기초하여 적정 요율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적절한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고용보험 요율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 적절한 고용보험 적립금 운영 전략은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지출 패턴이 안정화되지 않은데다가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해 향후에도 건강보험 요율과 함께 증가일로를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과 함께 2010년 현재 사회보험 요율이 사업주 부담 직접 노동비용의 18.5%에 이르고, 근로자 부담분까지 합할 경우 26.3%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부표 참조) 사회보험의 역할과 기업 활동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고려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더해 가리라고 판단된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을 계기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그 직접적 영향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2009년 고용보험사업 지출액이 급증했다. 1997~98년의 외환위기 당시에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협소하였던 탓에 위기의 강도는 2008~09년보다 더 컸지만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지출 증가는 오히려 크지 않았다. 반면, 2008~09년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용될 만큼 충격의 크기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사업의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지출이 증가한 데에는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시장 악화와 고용보험 프로그램의 역할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제도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고용보험제도가 더욱 성숙해 감에 따라 요율 조정 체계 또한 그에 맞추어 세련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허재준·김동헌(2002)은 허재준·김동헌·성재민(2001)의 추계모형과 ‘준비율 배수’ 개념에 입각하여 고용안정사업은 0.2%포인트의 요율 인하가 필요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0.15%포인트의 요율 인상이 필요하며, 실업급여사업은 장기실업상태의 자발적 이직자 급여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한 비록 모성보호급여제도가 도입되고 일용직 근로자의 적용 확대로 지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요율 조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한 바 있다.<sup>1)</sup>

1) 준비율 배수는 ‘역대 수지균형보험료율(=지출/피보험자 임금총액)의 최댓값’을 분모로 하고

한편 허재준·김동현·장은숙(2003)에서는 캐나다 요율 조정 방식의 역사적 전개와 재정 경험을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요율 조정 방식에는 요율 조정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적정적립금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요율 구조를 자동적으로 적용시키는 촉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책의 내부 시차가 길어지고 고용보험제도의 경기안정화 장치로서의 역할을 저해할 요소가 존재한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러한 진단에 의거하여 고용보험법에 요율 조정에 대한 준칙을 설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탄력적으로 요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허재준·김주영·윤미례(2008)는 2007년까지의 고용보험 재정 추이와 그 이후의 재정 전망을 통해 2008~09년 경제위기 이전에 이미 요율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바 있다. 2008~09년의 경제위기에 따른 지출 급증으로 말미암아 2009년의 고용보험 재정 적립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이 2조 7,272억 원, 실업급여 재정이 3조 5,310억 원으로 급감하여 더 이상 요율 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가동된 노사정위원회의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탄력적 요율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변동요율제 도입을 위한 적정적립금 기준을 고용보험법에 반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현행 고용보험법 제84조는 고용보험 기금의 여유자금 적정규모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1~1.5배, 실업급여 계정의 경우 연말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2.0배 수준으로 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보더라도 2009년 말의 고용보험 재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 2009년 지출액의 1.24배,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이 2009년 지출액의 0.78배에 불과하여 요율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채택된 현행 요율 변경 기준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지출 대비 누적적립금의 비율(이하 ‘적립금/지출 배수’로 칭함)은 요율을 낮출

‘당해 연도의 누적적립금/피보험자 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준비율 배수와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Vroman(1990, 1998)과 허재준·김동현·성재민(2001)의 연구를 참조.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편의(偏倚)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현행 요율 변경 지표인 적립금/지출 배수보다는 '준비율 배수'를 요율 조정의 준거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과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향후 고용보험 재정 운영이 경기안정화 작용자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고용보험제도 출범 후 2009년까지의 고용보험 재정 추이를 살펴본다. 제III장은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하고 현행 고용보험법에 반영된 적정적립금 규모 판단 기준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IV장은 현행 적정적립금 지표의 특성 및 한계와 본고가 적정적립금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준비율 배수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양자의 비교를 통해 왜 준비율 배수가 더 적절한 지표인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제V장은 요약 및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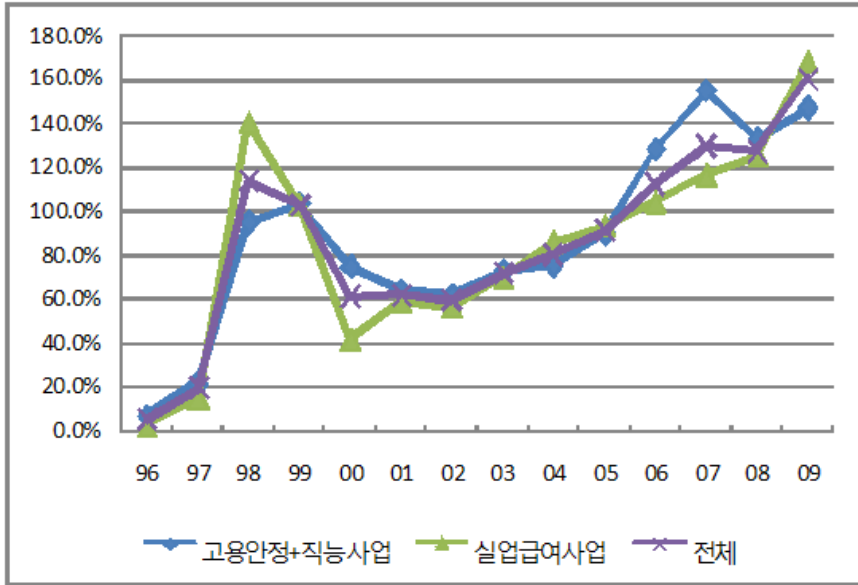
## II. 고용보험 재정 추이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에 출범한 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 고용보험사업의 지출은 제도 도입 당시의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그리하여 동 기간 축적되었던 적립금은 외환위기 직후 재정 고갈 없이 노동시장정책을 펼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경제안정화에 기여하였다. 1997년까지는 실업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주체(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도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비롯한 고용보험 재정이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 경제 주체들이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자 1998년과 1999년에 전체 고용보험 지출은 보험료 수입을 각각 21.9%, 3.2% 초과하고 이자 수입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의 86.5%, 85.2%에까지 이르렀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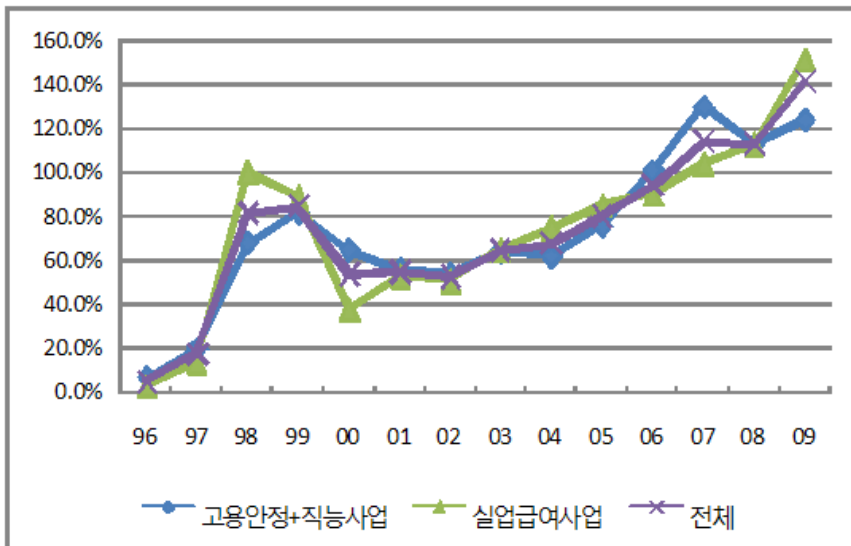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실업률이 7.0%까지 급등하고, 선진국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일단 증가한 실업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다.

(그림 1) 고용보험 재정 지출 추이

(a) 보험료 수입 대비 지출



(b) 전체 수입 대비 지출



자료: 노동부.

〈표 1〉 고용보험 요율의 변화

(단위: %)

	1995~98	1999~2002	2003~2009
고용안정사업	0.2	0.3	0.15
직업능력개발사업	0.1/0.3/0.5 (0.2259)	0.1/0.3/0.5/0.7 (0.3740)	0.1/0.3/0.5/0.7 (0.3449)
실업급여	0.6	1.0	0.9
전 체	약 1.0259	약 1.6740	약 1.3949

주: ( ) 안은 각 연도 전 사업체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평균치를 다시 해당 기간 동안 평균한 값임.

자료: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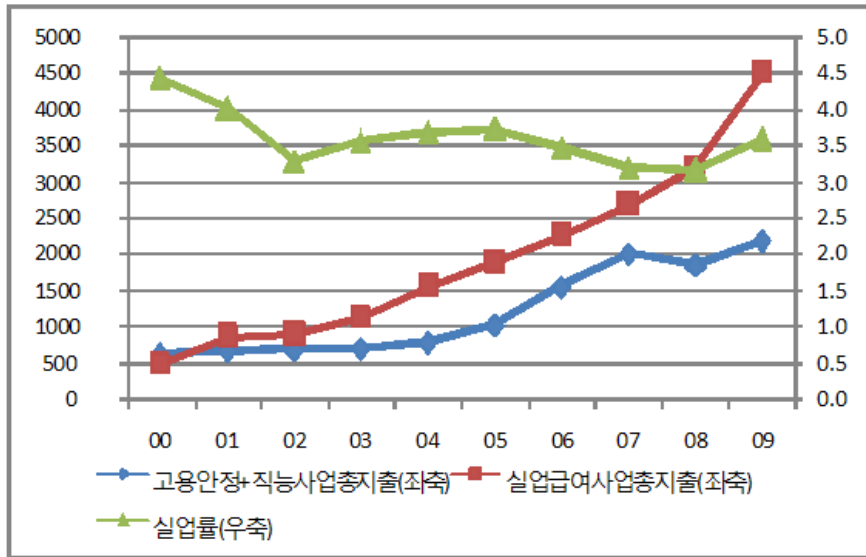
그리하여 정부는 1999년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여 고용안정사업 요율은 0.2%에서 0.3%로, 실업급여 요율은 0.6%에서 1.0%로 인상함으로써 고용보험 요율은 총 0.5%포인트 인상되었다(표 1 참조).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특성상 고용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상용직 위주의 피보험자에게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출에도 한계가 있었고, 사중효과와 대체효과가 큰 임금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도 대폭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게다가 1999년 하반기부터 노동시장이 급속히 호전되었다.

요율 인상 효과와 노동시장 상황 호전이 겹쳐 2000년 고용보험 재정 지출은 수입의 49.4%로 하락하였고 적립금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고용보험 적립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자 4년 후인 2002년에 정부는 다시 요율 인하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하여 2003년 1월부터 고용안정사업의 요율은 0.3%에서 0.15%로, 실업급여 요율은 1.0%에서 0.9%로 인하함으로써 고용보험 요율은 총 0.25%포인트 인하되었다.

[그림 2]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과 실업급여 재정의 지출과 실업률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실업급여의 재정 지출은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02~08년간에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이러한 추세를 넘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급여 지출은 실업률이 증가한 2002~04년간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감소한 2000~02년 및 2005~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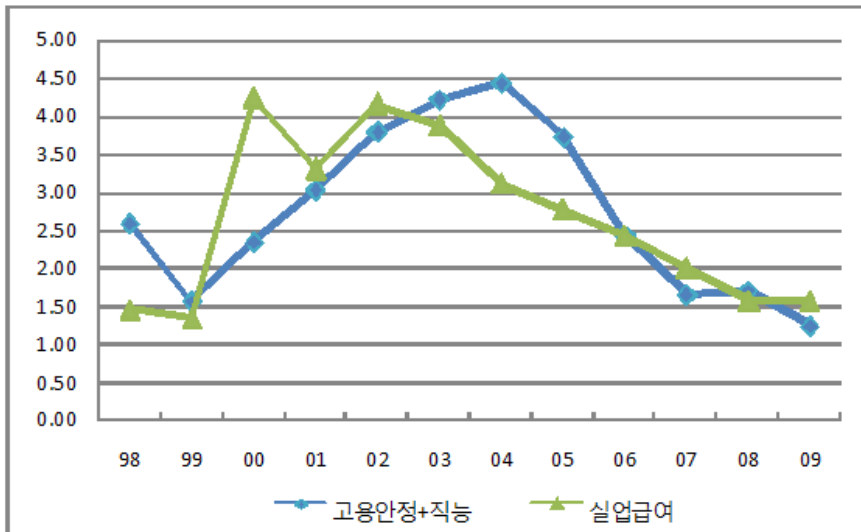
(그림 2) 고용보험사업 지출과 실업률 추이

(단위: 10억 원,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노동부, 고용보험재정 내부 결산자료.

(그림 3) 지출 대비 적립금 비율 추이



자료: 노동부.



〈표 2〉 고용보험 재정 추이

(단위: 억 원)

	계정	고용보험료	수입	지출	수지차	누적적립금
1995	고용안정사업	654	655	18	637	637
	직업능력개발사업	749	750	7	743	743
	실업급여	1,985	1,986	15	1,971	1,971
	전 체	3,389	3,390	39	3,351	3,351
1996	고용안정사업	1,510	1,601	125	1,476	2,113
	직업능력개발사업	1,714	1,822	100	1,722	2,465
	실업급여	4,552	4,835	140	4,695	6,666
	전 체	7,777	8,258	364	7,894	11,245
1997	고용안정사업	1,789	2,012	200	1,813	3,926
	직업능력개발사업	2,097	2,363	656	1,707	4,172
	실업급여	5,288	5,985	834	5,151	11,818
	전 체	9,174	10,361	1,689	8,672	19,916
1998	고용안정사업	1,948	2,720	1,110	1,609	5,536
	직업능력개발사업	2,078	2,906	2,708	198	4,370
	실업급여	5,742	8,069	8,089	-20	11,798
	전 체	9,768	13,695	11,907	1,788	21,704
1999	고용안정사업	3,065	3,732	2,026	1,706	7,242
	직업능력개발사업	4,015	5,217	5,310	-93	4,277
	실업급여	9,367	10,822	9,632	1,190	12,988
	전 체	16,447	19,771	16,968	2,803	24,507
2000	고용안정사업	3,782	4,482	1,321	3,145	10,386
	직업능력개발사업	4,726	5,378	5,026	342	4,619
	실업급여	11,970	13,309	4,998	8,282	21,270
	전 체	20,478	23,169	11,345	11,769	36,276
2001	고용안정사업	4,647	5,493	1,551	3,942	14,329
	직업능력개발사업	5,765	6,460	5,121	1,338	5,957
	실업급여	14,864	16,696	8,821	7,875	29,145
	전 체	25,276	28,649	15,493	13,155	49,431
2002	고용안정사업	5,070	5,951	1,279	4,672	19,000
	직업능력개발사업	6,020	6,767	5,593	1,174	7,131
	실업급여	16,075	17,979	9,130	8,849	37,994
	전 체	27,165	30,697	16,003	14,694	64,125
2003	고용안정사업	3,176	3,802	1,194	2,608	21,608
	직업능력개발사업	6,618	7,351	5,939	1,412	8,542
	실업급여	16,142	17,508	11,375	6,133	44,127
	전 체	25,936	28,661	18,508	10,153	74,277

〈표 2〉의 계속

	계정	고용보험료	수입	지출	수지차	누적적립금
2004	고용안정사업	3,164	4,464	1,473	2,991	24,599
	직업능력개발사업	7,292	8,340	6,424	1,916	10,456
	실업급여	18,347	21,145	15,844	5,301	49,428
	전 체	28,803	33,949	23,741	10,208	84,486
2005	고용안정사업	3,413	4,409	2,745	1,665	26,264
	직업능력개발사업	8,062	9,171	7,525	1,646	12,105
	실업급여	20,320	22,454	19,054	3,400	52,828
	전 체	31,796	36,036	29,323	6,711	91,179
2006	고용안정·직업능력	12,263	15,563	15,694	-132	38,237
	실업급여	21,865	25,412	22,842	2,570	55,398
	전 체	34,128	40,975	38,537	2,438	93,635
2007	고용안정·직업능력	13,096	15,531	20,226	-4,695	33,542
	실업급여	23,277	26,063	27,132	-1,069	54,329
	전 체	36,373	41,594	47,358	-5,764	87,871
2008	고용안정·직업능력	13,933	16,430	18,467	-2,037	31,506
	실업급여	25,752	28,628	32,290	-3,662	50,667
	전 체	39,685	45,058	50,757	-5,699	82,173
2009	고용안정·직업능력	14,964	17,717	21,951	-4,234	27,272
	실업급여	26,928	29,937	45,294	-15,357	35,310
	전 체	41,892	47,655	67,245	-19,591	62,582

주 : 2006년부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기금이 통합·운영됨.  
 자료 : 노동부.

간에도 증가했다. 자격을 갖추고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던 실직자들이 줄고 적극적으로 실업급여를 활용하는 실직자가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0~04년 기간을 제외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도 실업률 추이와 독립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리하여 2007년에는 급기야 전체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2000년 3조 6,000억 원, 2006년 9조 3,635억 원으로 증가한 후 2007년에는

8조 7,871억 원으로 감소했다(표 2). 그에 더하여 2008년 9월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들게 되자 2008~09년 고용보험 기금의 지출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적립금은 2008년 말 8조 2,173억 원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09년에는 6조 2,582억 원으로 급락하였다. 이처럼 지출이 크게 증가한 배경에는 노동시장 상황 악화에 따른 고용보험 프로그램의 역할 증대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외환위기 이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제도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의 합의안에 따라 탄력적 요율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적립금 기준이 고용보험법에 반영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84조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의 1~1.5배,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 연도 지출액 1.5~2배를 고용보험 기금의 적정적립금 규모로 정하고 있다.

2009년 말 현재 실업급여의 지출 대비 누적적립금의 비율은 0.78이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 대비 누적적립금의 비율은 1.24이다.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출 규모를 고려할 때 고용보험 적립금이 적정 규모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행 고용보험법에 의한 요율 조정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 Ⅲ.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적정적립금 규모 판단 기준

고용보험의 적정적립금 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정적립금 지표’와 적정적립금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수치, 즉 ‘지표 배율 수준’ 양자가 존재해야 한다. 적정적립금 지표에는 지출과 수입 간의 비율, 준비율 배수 등이 존재한다. 지출과 수입 간의 비율도 수입이나 지출을 어느 해의 수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준비율 배수도 지출이 많았던 해를 하나만 고려할 것인지 복수로 고려할 것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변형된 지표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적정적립금 수준을 나타내는 수치는 어떤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적정적립금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지표가 우월한가에 대한 논의를 자세하게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는 우선 2008년 5월 노사정위원회의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가 합의하여 정한 적립금 지표와 그 수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합의 내용 중에서 요율 조정 체계에 관한 부분은 다음 [글상자]와 같다.

[글상자]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요율조정체계 관련 부분

4.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금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이에 연계된 합리적인 요율조정체계를 마련한다.
  - 4-1. 안정적인 여유자금을 확보하면서도 적립금이 과다하게 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립금 규모를 실업급여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출액의 1.0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4-2. 적립금이 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되, 요율 조정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임금상승률,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제도 개선, 수지율(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4-3. 보험료율의 적기 조정을 위하여 요율 변경 방식은 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1000분의 30) 내에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현행 고용보험 요율은 대통령령에서 요율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84조, 보험료징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시행령 개정을 거쳐야만 요율 변동이 가능한 현재의 요율 체계는 경기변동 등에 따른 적립금의 과다·과소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적정적립금에 연계된 유연한 요율 조정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허재준, 2002; 허재준, 2007).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노사관계 주체의 요율 인상 저항 때문에 일단 요율을

낮추면 인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정부는 요율 인하에 소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요율 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법에 요율이 자동 조절되는 상황에 대한 준칙을 설정해 두고, 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재정 추계 작업을 통해 4~5년 내에 적정적립금 수준이 달성되도록 자동적으로 요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sup>2)</sup>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운영하여 고용보험의 제도발전 사항을 논의하면서 탄력적 요율 변경 방식 도입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과 2008년 5월 7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을 당해 연도 지출액의 1.0~1.5배, 실업급여의 적립금 역시 당해 연도 지출액의 1.5~2.0배 수준에서 유지하고 적립금 수준이 이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요율 조정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임금상승률, 피보험자 수, 고용보험제도 개선, 수지율(수입/지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요율 변경 방식은 현행 보험료 징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도(1,000분의 30) 내에서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기로 하였다.

## IV. 적정적립금 지표의 선택

### 1. 준비율 배수의 정의

여기서는 적립금/지출 배수보다 준비율 배수가 더 적절한 지표임을 보이고 향후 지표를 보완하려는 논의가 있을 때에 채택할 적정 지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적정적립금 규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탄력적 변동요율체계를 택하는 목적은 고용보험 요율체계를 적정적립금 규모에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다한 적립금이 쌓이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금 고갈의 위험도 예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2) 4~5년 내에 적정적립금 수준이 달성되도록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기변동 주기가 4년 남짓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가 2008년 5월 합의하여 도입한 기준은 과거보다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간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과다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적립금 규모에 따른 탄력적 요율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당분간 유사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 적절한 모형에 입각하여 고용보험 재정 추이를 전망해 볼 때 양 계정에서 각각 0.4%포인트와 1.1%포인트의 요율 인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힘입은 바도 크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를 검토하기 전에 먼저 준비율 배수의 정의를 환기해 두자. 준비율 배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text{준비율 배수}_t = \frac{\text{적립금}_t / \text{피보험자임금총액}_t}{\text{역대수지균형보험료율의최댓값}} \quad (1)$$

매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frac{\text{지출}}{\text{피보험자임금총액}}$ 로 정의된다. 따라서 T기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과거 어느 시점의 수지균형 보험료율보다 높다고 가정하면, T기의 준비율 배수는 다음과 같이 적립금/지출 배수와 동일하게 된다.

$$\text{준비율 배수}_T = \frac{\text{적립금}_T / \text{피보험자임금총액}_T}{\text{지출}_T / \text{피보험자임금총액}_T} = \frac{\text{적립금}_T}{\text{지출}_T} \quad (2)$$

## 2. 적립금/지출 배수와 준비율 배수의 비교

<표 3>은 그 동안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까지의 기간을 보면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1999년도에 역대 최댓값을 보이고 있고, 2007년에는 당해에 역대 최댓값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실업급

여와 전체 계정에서는 당해에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역대 최댓값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여전히 2007년의 값이 역대 최댓값이었다. 따라서 2006년까지의 기간에서 준비율 배수의 분모는 역대 최댓값을 보인 1999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값인 반면, 2007년까지의 기간에서 준비율 배수의 분모는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값이 된다. 2009년까지의 기간에서 실업급여와 전체 계정 준비율 배수의 분모는 2009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값이 되겠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 준비율 배수의 분모는 여전히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값이 된다.

2006년도말의 적립금이 알려진 2007년의 어느 시점에 적정적립금 규모와 적정요율을 판단하고 있다고 상정해 보자. <표 4>는 2006년까지 그 수치가 가장 높았던 1999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분모로 하여 계산한 준비율 배수이다. 준비율 배수를 적정적립금 판단을 위한 지표로 삼은 경우 2007년도에는 <표 4>의 마지막 열에 이탤릭체로 나타난 2006년도의 준비율 배수를 두고 판단할 것이다. 적립금/지출 배수를 적정적립금 판단을 위한 지표로 삼은 경우 <표 5>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2006년도 열을 두고 판단할 것이다.

<표 3> 수지균형 보험료율(=지출/피보험자 임금총액)

(단위: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고안·직능	0.01	0.03	0.10	0.39	<b>0.72</b>	0.51	0.43	0.41	0.34	0.37	0.45	0.65	<b>0.78</b>	0.65	0.73
실업급여	0.00	0.02	0.09	0.85	<b>1.03</b>	0.42	0.59	0.57	0.63	0.78	0.84	0.94	<b>1.05</b>	1.13	<b>1.51</b>
전 체	0.02	0.08	0.19	1.22	<b>1.66</b>	0.90	1.00	0.95	0.87	1.13	1.29	1.59	<b>1.83</b>	1.17	<b>2.25</b>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표 4> 준비율 배수: 2005~07년에 계산한 경우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고안·직능	0.59	0.84	1.26	1.42	1.57	<b>1.66</b>	<b>1.82</b>	<b>2.15</b>	<b>1.98</b>	<b>2.32</b>	2.35	2.19
실업급여	0.58	0.84	1.30	1.20	1.35	<b>1.73</b>	<b>1.91</b>	<b>2.30</b>	<b>2.39</b>	<b>2.36</b>	2.28	2.22
전 체	0.62	0.93	1.89	1.95	2.12	<b>2.45</b>	<b>2.71</b>	<b>3.22</b>	<b>2.97</b>	<b>3.41</b>	3.43	2.32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표 5〉 적립금/지출 배수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고안 · 직능	55.99	20.39	9.47	2.59	1.57	2.35	3.04	3.80	4.23	4.44	3.74	2.44	1.66	1.71	1.24
실업 급여	134.48	50.65	14.17	1.46	1.35	4.23	3.30	4.16	3.88	3.12	2.77	2.43	2.00	1.57	1.57
전 체	85.27	30.87	11.79	1.82	1.44	3.18	3.19	4.01	4.01	3.56	3.11	2.43	1.86	1.62	0.93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표 4〉 및 〈표 5〉에 의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의 준비율 배수는 각각 2.19, 2.22 수준인 반면 적립금/지출 배수는 각각 2.44, 2.43 수준이다. 2006년에는 이처럼 양자 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2002~04년의 상황이었다면 매우 다르다.

이제 〈표 4〉와 〈표 5〉에서 볼드체로 된 2000~04년간의 준비율 배수 추이와 적립금/지출 배수 추이를 비교해 보자.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지출 배수 구간[1.0, 1.5]과 실업급여의 적립금/지출 배수 구간[1.5, 2.0]에 비추어볼 때 준비율 배수가 적립금/지출 배수보다 훨씬 보수적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지출 배수는 2.35~4.44에 이르는 반면 준비율 배수는 1.66~2.32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살펴보면 실업급여의 적립금/지출 배수는 3.12~4.23에 이르는 반면 준비율 배수는 1.73~2.3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준비율 배수를 이용했다면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했을 2000~04년과 같은 시점에도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적립금/지출 배수에 입각해서 판단하면 요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낳기 쉬웠을 것이다.

그리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립금/지출 배수 1.0~1.5배 값이나 실업급여의 적립금/지출 배수 1.5~2.0배 값을 적정적립금 기준으로 채택한 경우 요율을 낮추어서는 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적립금/지출 배수를 적정적립금 지표로 삼으면서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바대로 그 값의 1.0~1.5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나 1.5~2.0배(실업급여)를 준거 값으로 삼는 것은 적립금을 과소하게 보유하게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 준비율 배수 : 2008~09년에 계산한 경우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고안·직능	0.54	0.78	1.16	1.30	1.44	1.52	1.67	1.98	1.82	2.13	2.16	2.01	1.66	1.41
실업급여	0.57	0.82	1.28	1.18	1.32	1.69	1.87	2.25	2.35	2.31	2.23	2.17	2.00	1.69
전 체	0.56	0.84	1.71	1.77	1.93	2.22	2.46	2.92	2.69	3.10	3.11	2.11	1.86	1.57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이제 2008년이나 2009년의 어느 시점에 적정적립금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99년도의 그것을 능가한다. 따라서 이제 2007년의 준비율 배수는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을 분모로 한 지표가 된다. 식 (2)에서 보인 것처럼 2007년도의 준비율 배수 분모는 2007년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과 같아 2007년도에는 <표 5> 및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준비율 배수와 적립금/지출 배수의 지표 값이 일치한다.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2007년도와 마찬가지로 양 지표 값이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진동하는 형태를 띠게 되면 2002년과 2003년에 대해 적립금/지출 배수에는 변화가 없는 반면 준비율 배수는 이전보다 더 보수적인 값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표 4>~<표 6>을 비교해 보면 적립금/지출 배수 지표 값은 준비율 배수 지표 값에 비해 변동성이 훨씬 크며,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편의(偏倚)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은 실업급여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2009년에 최고 수준을 경신함으로써 다시 계산된 준비율 배수이다. 2010년에 실업급여의 준비율 배수를 계산해 보면 0.78이며 <표 6>의 경우보다 더욱 보수적 수치가 도출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가장 보수적인 값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역대 경기변동 과정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민감성이나 경기탄력성 분석을 행하여 변형된 준비율 배수를 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준비율 배수의 분모를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높았던 세 해의 평균치로 정하는 것 등이 그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고용보험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해 아직 지출 추이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증가하

〈표 7〉 준비율 배수 : 2010년에 계산한 경우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고안·직능	0.54	0.78	1.16	1.30	1.44	1.52	1.67	1.98	1.82	2.13	2.16	2.01	1.66	1.41	1.17
실업급여	0.39	0.57	0.89	0.81	0.92	1.17	1.30	1.56	1.63	1.60	1.55	1.51	1.39	1.17	0.78
전 체	0.46	0.69	1.39	1.44	1.57	2.45	2.00	2.38	2.19	2.52	2.53	1.72	1.51	1.28	1.51

자료: 노동부의 고용보험 재정통계로부터 필자 계산.

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다가 경기변동상의 충격에 의한 지출 증가폭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준비율 배수를 채택한다면 보수적 기준인 역대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최댓값을 분모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변동성이 큰 지표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작은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점에만 주목하더라도 변동성이 작은 준비율 배수가 적립금/지출 배수에 비해 더 우월한 지표임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하는 편의(偏倚)를 갖고 있는 지표보다는 그러한 편의를 갖지 않는 지표가 우월하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가 채택한 적립금/지출 배수보다는 허재준 외(2001)가 제안한 바 있는 준비율 배수를 변형시킨 지표를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추후 적절한 시점에는 요율 조정의 준거 지표를 적립금/지출 배수보다는 준비율 배수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할 것이다.

준비율 배수를 기준으로 택해야 한다고 주장할 주체조차 노사정위원회 논의에서 적립금/지출 배수를 준거점으로 택하기를 원했고, 당분간 고용보험 재정 지출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여 매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이 준비율 배수의 분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금번 최종 합의문이 채택한 기준에 의거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재정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노동부는 특히 적립금/지출 배수가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고용보험(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참여하는 주체들도 이 점을 고려하고 추후 적절한 시기에 요율 조정의 준거 지표를 준비율 배수 개념에 입각한 지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 향후에 채택해야 할 준비율 배수의 형태

현재에는 고용보험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해 아직 지출 추이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다가 경기변동상의 충격에 의한 지출 증가폭을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에 준비율 배수를 채택한다면 보수적으로 ‘역대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최댓값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 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향후 10년 내외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요율 조정 준거점을 준비율 배수로 바꾼다면, 이보다는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 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과 같이 정의되는 준비율 배수 지표가 더 적절할 가능성이 높다.

그 즈음에는 역대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최댓값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를 기계적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어떻게 정의한 준비율 배수 지표를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준비율 배수를 정의할 때 ‘과거 ○○년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평균을 분모’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V. 요약 및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1995년 고용보험제도 출범 후 2009년까지의 고용보험 재정 추이를 살펴보고 현행 고용보험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정적립금 규모 판단 기준의 특성 및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와 함께 준비율 배수를 적정적립금 지표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였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요율 변경 기준인 적립금/지출 배수는 요율을 낮출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물론 요율을 낮추어서는 아니 될 때에도 요율을 낮추도록 판단하게 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적립금/지출 배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준비율 배수는 이러한 편의(偏倚)로부터 자유로운 만큼 더 우월한 적정 적립금 판단기

준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준비율 배수를 적정적립금 판단 기준으로 채택할 때에는 고용보험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변용된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기금 재정이 경기변동 주기 간에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는 시기가 되면 ‘과거 ○○년 간 가장 높았던 ○개 연도의 수지균형 보험료율 평균을 분모’로 하는 준비율 배수 형태가 적절할 것이다. 예컨대,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3개 연도 수지균형 보험료율의 평균을 분모로 하고 당해 연도의 적립금/피보험자 임금총액을 분자로 하는 비율’이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 형태는 우리나라의 경기변동 과정에 나타난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고용보험 재정 경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현·허재준. 「미국·캐나다의 고용보험 재정전략 경험과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립금 규모의 적정성」. 『고용보험동향』 6(2)(2001): 115~132.
- 신종각·김기호·박찬용·김동현·허재준·김용하·김정호. 『노동시장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08.
- 한국고용정보원. 『2007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2008.
- \_\_\_\_\_. 『2008 고용보험통계연보』. 한국고용정보원, 2009.
- 허재준. 「고용보험의 요율조정체계 개선방안」. 미간행 원고, 한국노동연구원, 2002.
- \_\_\_\_\_. 「고용보험의 적정적립금 지표와 탄력적 요율조정체계」. 노사정위원회 고용보험제도발전위원회 발표문, 2007.
- 허재준·김동현.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정 요율」. 『사회보장연구』 18(1)(2002): 1~34.
- 허재준·김동현·성재민. 『고용보험 재정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 허재준·김동현·장은숙. 『고용보험 요율조정체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3.

허재준·김주영·윤미래. 『고용보험 재정추계 모델 개발』. 한국노동연구원, 2008.

Kesselman, Jonathan R. *Financing Canadian Unemployment Insurance*. Canadian Tax Paper No. 73. Canadian Tax Foundation, 1983.

Vroman, Wayne. *Unemployment Insurance Trust Fund Adequacy in the 1990's*.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0.

\_\_\_\_\_. *Topics in Unemployment Insurance Financing*. Kalamazoo, MI: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1998.

[부 표]

〈표 A-1〉 사회보험 요율 : 2005년

(단위: %)

	사업주	근로자	전 체
산재보험	1.62	-	1.62
건강보험	2.155	2.155	4.31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954	0.45	1.404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소 계	9.269	7.105	16.374
퇴직(연)금	8.30	-	8.30
전 체	18.539	7.105	24.704

주: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2009년도 전 사업체 평균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3544%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표 A-2〉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 요율 : 2005년

(단위: %)

	사업주	근로자	전 체
산재보험	1.62	-	1.62
건강보험	2.155	2.155	4.31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70	0.45	1.1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소 계	9.02	7.11	16.12
퇴직(연)금	8.30	-	8.30
전 체	18.03	7.11	24.45

주: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1%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표 A-3〉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최소·최대값 : 2005년

(단위 : %)

	최소	최대	평 균
산재보험	0.50	61.10	1.62
건강보험	2.155	2.155	2.155
국민연금	4.50	4.50	4.50
고용보험	0.65	1.25	0.9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0.04	0.04
소 계	7.845	69.045	9.265
퇴직(연)금	8.33	-	8.33
전 체	16.18	69.05	17.60

〈표 A-4〉 사회보험 요율 : 2010년

(단위 : %)

	사업주	근로자	전 체
산재보험	1.80	-	1.80
건강보험	2.665	2.665	5.33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950	0.450	1.400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35
소 계	10.130	7.790	17.920
퇴직(연)금	8.33	-	8.33
전 체	18.46	7.79	26.25

주 :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2009년도 전 사업체 평균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3502%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표 A-5〉 100인 미만 사업체의 사회보험 요율 : 2010년

(단위 : %)

	사업주	근로자	전 체
산재보험	1.80	-	1.80
건강보험	2.665	2.665	5.33
국민연금	4.50	4.50	9.00
고용보험	0.70	0.45	1.1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35
소 계	9.88	7.79	17.67
퇴직(연)금	8.33	-	8.33
전 체	17.96	7.79	26.00

주: 산재보험 요율은 전 업종 평균 요율, 고용보험 요율은 150인 미만 사업장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0.1%를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표 A-6〉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최소·최대값 : 2010년

(단위 : %)

	최소	최대	평균
산재보험	0.60	36.00	1.80
건강보험	2.665	2.665	2.67
국민연금	4.50	4.50	4.50
고용보험	0.65	1.25	0.95
임금채권보장기금	0.04	0.04	0.04
노인장기요양보험	0.175	0.175	0.175
소계	8.63	44.63	10.13
퇴직(연)금	8.33	-	8.33
전 체	16.96	44.63	18.46



abstract

---

## Evaluation of the Current Measure of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and Reserve Ratio Multiple as an Alternative Measure

Jai-Joon Hur · Dong-Heon Kim

The measure of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as currently specified in the Employment Insurance Law, which is the ratio of year-end accumulated surplus to benefit payments, has a bias toward reducing contribution rates, even when such adjustment is unnecessary or undesirable. In this paper we introduce a measure called the reserve ratio multiple (RRM)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test fund adequacy. The reserve ratio multiple is a quotient that is computed from two ratios. The denominator is benefit outlays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in the highest cost year, while the numerator is total net reserves at the end of the current year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otal covered payrolls for the year. For the coming years, this simple RRM measure seems to be adequate to be used to test fund adequacy. But we recommend, as an example, an RRM with an high-cost rate measured as the average of the three highest-cost 12-month periods in the past 20 years, after more than 10 years later. Indeed, specific forms of the RRM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UI recipients and historical developments in Employment Insurance funds.

Keywords : reserve ratio multiple, employment insurance fund adequacy, break-even contribution rate, employment insurance